

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3항"을 "제3항, 시행령 제6조의2"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"20"을 "10인 이상 20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제1호 중 "차관"을 "2차관"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, 부위원장"을 "부위원장"으로 한다.

③ 공동위원장은 1인은 기획재정부 2차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.

제4조제7호 중 "위원회에 부의하는"을 "위원회 회의에 올리는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통할한다"를 "총괄한다"로 한다.

제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등

제7조 앞에 "제3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등"을 삭제한다.

제7조제2항 본문 중 "부의사항"을 "회의에 올리는 사항"으로 하고, 같은

항 단서 중 "긴급을 요하는"을 "긴급한"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 보칙

제11조 앞에 "제4장 보칙"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7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3항, 시행령 제6조의2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	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 ----- 10인 이상 20-----.
<신설>	③ 공동위원장은 1인은 기획재정부 2차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.
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,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	④ 부위원장----- ----- ----- -----.
1. 당연직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 차관, 기획조정실장, 정책기획관	1. ----- -- 2차관----- -----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음)
④ ~ ⑥ (생략)	⑤ ~ ⑦ (현행 제4항부터 제6

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
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
사항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
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
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(생략)

제3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등

<신설>

제7조(회의의 운영) ① (생략)

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
의 일시,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
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
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
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
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~ ⑤ (생략)

제9조(위원의 기피·회피) ① (생
략)

제4장 보칙

항까지와 같음)

제4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----- 위원회 회의에 올리
는 -----
--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

----- 총괄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등

제7조(회의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
음)

② -----
----- 회의에 올리는
사항-----

---. ---- 긴급한 -----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위원의 기피·회피) (현행
제1항과 같음)

<삭제>

